

적정사육시설 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주의

- 축산업등록제 1월 1일 시행
- ‘밀집사육 방지’ 친환경축산 촉진 목적

오는 1월 1일부터는 축산업등록농가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시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등 전국의 양돈농가에서는 지나친 밀집사육을 피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는 웅돈 두당 약3평, 임신돈 0.4평, 분만돈 1.1평, 후보돈 0.9평, 자돈 0.09평, 육성돈 0.18평, 비육돈 0.3평에서 사육해야 된다.

농림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당 사육시설 면적을 지켜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면 약품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두당 사육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육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을 사육하면 제재를 받게 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두)

구 분	웅 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총부대기돈	후보돈	자 돈	육성돈	비육돈
두당 소요면적	9.7	1.4	3.9	1.4(스틀) 3.1(군사)	3.1(군사)	0.3	0.6	0.9

※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두)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89	2.51	0.93	0.72	0.87

※ 양돈업 경영형태 유형

- 1) 일과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 2) 번식경영(1) : 번식 - 분만
- 3) 번식경영(2) : 번식 - 분만 - 자돈

- 4) 비육경영(1) : 자돈 - 비육
- 5) 비육경영(2) : 비육

※ 총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